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해철・정혜경

김문수・박지원・이수진

김태선 · 김 윤 · 장종태

이광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, 가해자의 '셀프 조사'가 이뤄 진다는 한계가 있음. '셀프 조사'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,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 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.

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'셀프 조사'의무가 존속한다는점,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

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'셀프 조사'의무를 제거하며,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사의 무를 제거함(안 제76조의3제2항 단서 신설).
- 나.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76조의4 제1항 신설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와 괴롭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,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반드시 명하도록 함(안 제76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가 사용자인 경우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제76조의4제1항에서 같다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·명령 등)
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를 포함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고,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"제2항에 따른 조사"는 "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"로 본다.

- ③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 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76조의3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조사의 절차,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76조의3제2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"을 "제76조의3제2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(제76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76조의4제3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신 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 사 용자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 중 제76조의3제2항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사용자의 조사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아 혂 개 정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 (생 략) 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 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 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--. 다만,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다. <단서 신설> 자가 사용자인 경우(사용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제 76조의4제1항에서 같다)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⑦ (생 략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 · 명령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 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 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사용자를 포함한 당사

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 자등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 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제3항부 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명 할 수 있고, 피해근로자가 요청 하면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 7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서 "제2항에 따른 조사"는 "제7 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"로 본 다.
- ③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의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76조의3제7항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.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2 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제7 항·제9항, <u>제76조의3제2항·</u> <u>제4항·제5항·제7항</u>, 제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 조를 위반한 자
- 3.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	<u>6</u>	제1형	항에	따른	신고:	의 병	법		
	<u>및</u>	조사	·의 >	절차,	제2항	બી ઘ	른		
	고	용노등	동부정	상관의	조치	명령	및		
	제3	항에	따른	를 통보	- 등에	관히	-여		
	<u>필</u> .	요한	사항	은 고	용노동	등부렁	<u>  0</u>		
	<u>로</u>	정한	<u>다.</u>						
제	116	조(고		<u>(</u> ) (1)	(현행3	과 같	음)		
	2								
1. (현행과 같음)									
	2.								
	_								
	_		2	제76조	.의3제	2항 •	제		
	4	항• 🤇	제5힝	• 제7	7항(제	76조	의4		
	<u></u>	레	준용	하는 >	경우를	포함	<u> 한</u>		
	<u></u>	<del>}</del> ), ;	세762	조의47	<u> 세3항</u> -				
	_								

③ (현행과 같음)